

2019. 03. 26. 제2019-001호

# 플랫폼 경제 시대, 프리랜서 보호법의 제정과 시사점 :뉴욕시와 서울시의 사례

Freelancer Protection Act and Implications in Platform  
Economy Era : Case of New York City and Seoul

유재홍 선임연구원  
([jayoo@spri.kr](mailto:jayoo@spri.kr))<sup>†</sup>

이종주 연구원  
([lj@spri.kr](mailto:lj@spri.kr))

- 이 보고서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으로 과기정통부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 견해이며, 본 보고서와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재홍(jayoo@spri.kr) 선임연구원

## 《 요약 문 》

플랫폼 경제의 시대다. 양면 시장을 특성으로 하는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의 특성은 시간, 공간, 자산, 재능 등 다양한 유희 자원을 가진 사람들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낸다. 승차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각종 집안일을 해주는 태스크래빗(Task Rabbit), 반려견의 산책 도우미를 찾아주는 왜그(Wag) 등이 그러한 예이다. 여기에 번역, 디자인, 작가,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러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프리랜서닷컴 (Freelancer.com), 업워크 (Upwork), 깃워커(GigWalk)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급성장 중이다. 플랫폼 경제는 유연한 고용 형태를 지향하는 독립계약자 즉 프리랜서들이 주도하는 경제다.

하지만, 프리랜서가 중심이 된 플랫폼 경제를 비정규직 양산 경제로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체계에서 법적 지위가 모호한 프리랜서들은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갑(甲)-을(乙)구조에서 프리랜서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불공정 거래와 임금체불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법률적 구제에 대한 기대치도 낮을뿐더러 보복이 두려워 불합리한 고용주의 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의 활용이 많은 IT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뉴욕시와 서울시가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두 도시의 법안은 정책 지향점, 프리랜서의 정의와 범위, 전담 조직 운영 방식, 사후 정보 수집 및 공개 체계 등 몇 가지 점에 비교된다. 인구 천만에 육박하는 두 도시의 조례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정책으로서 의의가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두 도시의 입법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 《 Executive Summary 》

It is the age of platform economy. The platform that characterizes the two-sided market connects various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This platform economy creates a variety of new industries by linking people with various idle resources such as time, space, assets, and talents to those who need them. for example, Uber that provides ride sharing services, TaskRabbit that does various housework, and Wags that find dog walkers. The online platform that connects these people with people who need various talents such as translation, design, writer, and programming is also growing rapidly. The platform economy is an economy led by independent contractors, or freelancers.

However, there exists criticism that the platform economy centered on freelancers is 'gig economy', a massive non-regular workers production economy. In reality, freelancers whose legal status is ambiguous in the legal system centered on regular workers are in the welfare blind spot. In the position of the relative weakness in the structure of the employment, there are problems such as poor working environment, unfair contract and wage depreciation. With low expectation of legal remedy and fear of retaliation freelancers are not actively responding to unreasonable employer's actions. In particular, this problem is hardly improved in the IT industry, where considerable software freelancer developers have been working on.

In this situation, New York and Seoul introduced new laws for the protection of freelancers. However, the two cities' legislation is compared to several points such as policy orientation, the definition and scope of freelancers, the way in which the organization operates,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porting systems. It is significant that the laws of the two cities have implemented the preemptive protection policy for the freelancers whose activity in the platform economy age is gradually increasing. This report examines the legislative contents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 《 목 차 》

- 1. 배경 ..... 1
  - 1.1 플랫폼 경제의 부상 ..... 1
  - 1.2 플랫폼 경제 시대의 프리랜서 ..... 2
- 2. 사례1: 뉴욕시의 프리랜서 보호 조례 ..... 5
  - 2.1 배경 ..... 5
  - 2.2 내용 ..... 7
  - 2.3 성과 .....9
- 3. 사례2: 서울시의 프리랜서 보호 조례 ..... 11
  - 3.1 배경 ..... 11
  - 3.2 내용 ..... 13
- 4. 정책 시사점 ..... 16
- 별첨1 : 뉴욕시 프리랜서 보호 조례 ..... 20
- 별첨2 : 뉴욕시 고발장(Complaint)의 주요 항목 ..... 21
- 별첨3 : 뉴욕시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 22
- 참고 문헌 ..... 23

# 1. 배경

## 1.1. 플랫폼 경제의 부상

-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이른바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가 활발하게 진행 중
  -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가 존재하는 양면시장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이들의 경제적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
  - 디지털 신산업 기업들이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는 공유경제, 깃(Gig) 경제, 프리랜서 경제<sup>1)</sup> 등 다양한 용어로 일컬어지며 성장 중
    - 서비스의 핵심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력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중개해 주는 것
      - \* 최근 정부는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2019. 1. 9)
    - 운송, 숙박, 금융, 공간, 재능 등 다양한 자원을 매개로 한 디지털 신산업이 등장하고 산업의 한 축으로 급성장 중

<표 1-1> 플랫폼 경제의 대표적 서비스와 기업들

플랫폼 경제	서비스 제공 방식	기업 (*국내기업)	
숙박공유	빈집, 빈방 등 숙박시설을 플랫폼으로 중개	에어비엔비, <i>코자자*</i>	
교통	차량공유	모바일 기반 무인렌트업, 시간 단위 대여	집카, <i>쏘카*</i>
	승차공유	비상업용 자동차를 활용한 유상 운송 수단	우버, 리프트, <i>풀러스*</i>
	배달대행	운송, 배달 업무를 중개 또는 대행하는 서비스	<i>고고맨, 바로고*, 메쉬코리아*</i>
금융	중권형	펀딩 대가로 지분을 취득, 배당 수익 수취	클라우드큐브, <i>와디즈*</i>
	대출형	펀딩 대가로 약정된 금리, 원금 수령(P2P대출)	렌딩클럽, 루팍스, <i>에잇퍼센트*</i>
	기부형	기부금 및 개인적인 프로젝트 자금 모집	키바(Kiva), <i>와디즈*</i>
	보상형	펀딩 대가를 물품으로 수령	kickstarter, 인디고고, <i>펀딩포유*</i>
공간 중개	회의실, 사무실, 매장, 주차장 등 공간공유	리퀴드스페이스, <i>스윙스팟*</i>	
노동력 중개	개인의 노동력 제공	태스크래빗, 핸디, <i>미소*</i>	
일감(지식서비스)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일감) 중개 * 일감의 74%이상 SW·멀티미디어 개발관련 <sup>2)</sup>	프리랜서닷컴, 업워크, <i>이랜서*, 위시켓*, 크몽*</i>	

출처: 서울신문<sup>3)</sup> 수정 보완

1) 뉴스위크 (2017. 9. 25), 프리랜서 경제의 부상  
 2) 영국 옥스포드 대학이 개발한 온라인노동지수(OLI)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 서비스의 45.8%가 SW관련 직종이며 디지털콘텐츠 제작까지 포함하면 74.4%에 달함  
<https://ilabour.oii.ox.ac.uk/online-labour-index/>, 2019. 1. 29 방문 기준)  
 3) 서울경제 (2016. 8. 17), 공유경제 어디까지 와 있나

## 1.2. 플랫폼 경제 시대의 프리랜서

- 플랫폼 경제 시대에는 인간의 유희 자원(시간, 공간, 재능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프리랜서들의 활동이 증대
  - 실제 프리랜서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법적·통계적 정의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sup>4)</sup>
    - 프리랜서는 독립계약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
      -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분류에서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sup>5)</sup>’ 비임금 근로자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음
- 공유경제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직업 중개 플랫폼 이용자, 다양한 마이크로 잡(Micro-job)의 등장인 이러한 프리랜서 경제를 견인
  - 2017년 기준 프리랜서들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00조 원이며 향후 경제 인구의 절반 이상이 프리랜서일 것으로 전망
    - \* 미국 프리랜서유니온과 업워크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 내 프리랜서는 5,730만명, 2027년에는 미국 노동력의 50% 이상인 8,650만명이 프리랜서일 것으로 전망<sup>6)</sup>
  - 2010년을 전후하여 생겨난 공유경제의 대표서비스인 승차공유서비스에는 현재 수 백만명의 운전사가 활동
    - \* 업계 선두 우버는 약 300만명(미국내 75만명), 2위 Grab은 260만 명, Lyft 140만명
  - 소프트웨어분야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프리랜서들의 일감 중개 플랫폼도 급성장 중에 있음
    - \* 업계 선두 Freelancer.com은 2,700만명, Upwork은 1,200만명의 프리랜서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감의 약 74%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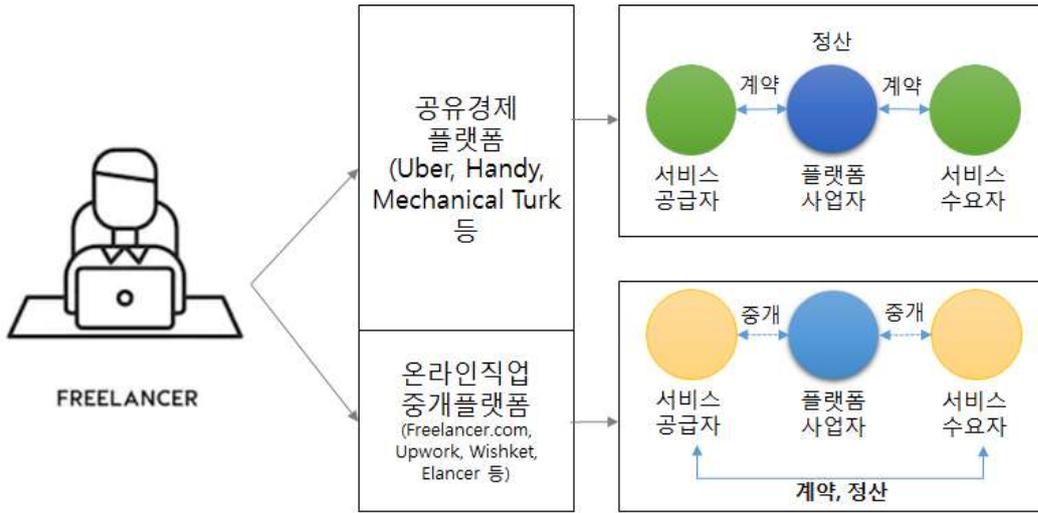
4) 이승열 외,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2013. 12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차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만 해당

6) Upwork.com, Freelancing in America 2017

- 국내외에서 심부름 대행(Gigwalk), 반려견 산책(Wag), 가사도우미(Miso), 중고차 구매 도우미(Carvazo)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잡 등장
- \* 마이크로 잡(Micro Job) : 고객이 보다 생산성 높은 일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휴식하기 위해 생활 속 소소한 일들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그림 1-1] 플랫폼 경제와 프리랜서



출처: 저자 작성

-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를 전제로 한 기존 노동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들의 보호 문제가 대두
  -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플랫폼 종사자들은 전통적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이나 장기적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직으로 처우 문제
    - \* 우버 기사가 증가할수록 기사 당 소득이 감소하여 2018년 들어 8개월간 6명 자살<sup>7)</sup>, 뉴욕시 의회는 공유 차량의 신규 등록을 1년 간 제한하는 법안 통과 ('18.8)
  - 반면, 제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에 있는 SW분야에서도 프리랜서들의 근로 환경 및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 실태조사 결과 SW프리랜서의 약 75%이상이 업무 변경, 기간연장, 임금체불 등 업체의 계약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통해 호소 (어느 IT노동자의 죽음) (SPRI, 2018)

7) 2015년 미국 내 6만 3천대 수준의 우버 차량은 2018년 8월 10만 이상으로 증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24500149>

<표 1-2> 프리랜서 업무 특성에 따른 플랫폼 비교

구분	공유경제플랫폼	온라인직업중개
가격투명성	높음(대체로 공개)	낮음(계약에의존)
과업명료성	높음	낮음(계약에의존)
고용관계	서비스공급자와 수요자간 직접적 고용관계 약함 (플랫폼 매개)	직접적 고용관계 높음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 체결)
분쟁	플랫폼사업자와 기존산업 공급자간의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계약 이행에 따른 분쟁
플랫폼 역할	계약의 자동화 정산의 자동화	일감 등록 및 중개
업무처리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수익모델	종량제 서비스 요율 적용	중개 수수료 (완전 종량제는 아님)

-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노동력 공급의 핵심이 되는 프리랜서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뉴욕시와 서울시에서는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뉴욕시는 우버 운전사의 시간당 최저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미국 최초로 프리랜서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 ( '17.5)
    - 서울수도 국내 지자체 최초로 프리랜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 ( '18.10)
- 이에, 이 보고서에는 최근 제정되어 시행중인 뉴욕과 서울시의 프리랜서 보호 조례를 검토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뉴욕시의 프리랜서 보호 조례<sup>8)</sup>

### 2.1. 배경

- 뉴욕시는 다양한 이민자 계층이 모여들어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
  - 뉴욕시 거주자는 2017년 기준 약 862만 명이며 근로자는 약 503만 명으로 이중 상용근로자는 약 465만 명이며 프리랜서는 38만여 명으로 추정
  - 뉴욕의 자영업자(self-employed)의 53%가 외국 태생 이민자이며 기술·컴퓨터 관련 직무 종사자의 47%가 외국 이민자<sup>9)</sup> (2017. 1월 기준)
  - \* 뉴욕시의 이민자 수는 1910년 41%로 정점, 2011년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뉴욕시 노동인구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간호직, 경비, 청소, 가정부, 가사 도우미, 택시 운전사, 건설 노동직 등 비정규직 인력<sup>10)</sup>

<표 2-1> 뉴욕시 근로자 규모 및 특성

	Wage & Salary Workers (n=4,646,711)	Freelance Workers (n=384,465)	All NYC Workers (n=5,031,176)	OLPS Complaints (n=264)
<b>Female (%)</b>	48%	39%	48%	50%
<b>Primary language (%)</b>				
English	55%	50%	55%	97%
Spanish	21%	23%	21%	0%
<b>Median Annual Income (\$)</b>	\$45,500	\$30,000	\$45,500	\$47,500
<b>Education (%)</b>				
Less than High School	10%	14%	10%	0%
High School Diploma/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GED)	20%	20%	20%	1%
Some College or Associate's Degree	23%	18%	23%	13%
Bachelor's Degree	28%	27%	28%	79%
Graduate Degree	19%	22%	19%	6%
<b>Age (%)</b>				
18-29	23%	9%	23%	46%
30-39	26%	22%	26%	29%
40-49	22%	24%	22%	18%
50-59	19%	24%	19%	7%
60-69	9%	15%	9%	0%
70-79	1%	4%	1%	0%
80+	0%	1%	0%	0%

출처: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2018.5)

8) NYC 법안 설명 홈페이지, <https://www1.nyc.gov/site/dca/about/freelance-isnt-free-act.page>

9) NYC Controller, Scott M. Stringer, Our Immigrant Population Helps Power NYC Economy, 2017. 1.

10) 뉴욕주 감사관실, 뉴욕시 경제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역할, 2013. 11

- 뉴욕시는 증가하는 프리랜서들을 임금 체불, 고용주의 보복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한 법안을 제정
- 뉴욕시는 차량공유플랫폼(Uber, Lyft)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사에게 최저임금요율을 지불할 것을 미국 최초로 확정( '18.12)<sup>11)</sup>
    - 우버 측은 운전사가 독립계약자로서 우버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뉴욕시의 법정 최저임금 \$15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 왔음
    - 하지만, 뉴욕시는 시간당 \$11.90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버 운전사의 시간당 최저요금을 \$17.22(세후)로 상향했으며 이를 통해 풀타임 운전사는 연간 \$9,600달러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
    - \* 뉴욕시 공유차량서비스 운전사 등록자: 12,500 (2015.1) → 78,000 (2018.7)명 추산
  - 또한 미국 최초로 프리랜서들을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고 시행
    - 조례 제정 전 프리랜서들의 71%가 계약상대방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연평균 미수금이 약 6,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sup>12)</sup>
      - \* 뉴욕시 노동정책기준국(OLPS)<sup>13)</sup>은 약 15만명의 뉴욕시 프리랜서가 임금지연 및 체불 문제를 겪는 것으로 추정
    - 또한, 다수의 프리랜서들이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해 고용주의 불합리한 처사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고용주의 부당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 \* 프리랜서의 28%만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 이에, 일명 프리랜서 보호법인 <Freelance Isn't Free Act>를 제정하여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

11) <https://drivingguild.org/2018/12/04/nyc-sets-nations-first-minimum-wage-for-app-based-drivers/>

12) \* 2015년 Freelancers Union의 보고자료(The Costs of Nonpayment)

13) 뉴욕시의 소비자 보호부(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로 약칭함) 산하의 노동정책기준국(Office of Labor Policy & Standards)의 출입말이며, <Freelance Isn't Free Act>의 소관부서임

## 2.2. 내용

□ 조례에는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 지급 기한 준수 의무, 보복으로부터의 자유, 고발, 소송서비스(Court Navigation Service) 등 프리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조례 § 20-927에서 프리랜서는 “보상을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도록 고용 측에 의하여 독립계약자로 고용되거나 유지되는 자연인 또는 1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법인격 여부 또는 상호명 사용 여부를 불문한다” 고 규정

\* 뉴욕시 노동법 제191-a에 정의된 영업사원<sup>14)</sup>, 법무종사자, 면허 보유 전문 의료인 제외

- 다만, § 20-935<sup>15)</sup>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프리랜서의 법적지위\* 판단에 대한 결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가 문제될 경우 별도의 법과 관례에 따름

<표 2-1> 뉴욕시 프리랜서 보호조례의 주요 내용

프리랜서의 권리	시의 지원
계약서 작성 (Written Con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00달러 이상의 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필수</li> <li>4개월안에 800달러 이상의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는 반드시 과업내용 (the work you will perform), 계약 금액, 지급 시기를 명시</li> <li>계약서는 쌍방이 복사하여 보관</li> <li>OLPS가 표준 계약서 작성 보급<sup>16)</sup></li> </ul>
지급 시기 준수 (Timely Pa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금은 반드시 지급 시기에 맞춰 지급되어야 함</li> <li>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과업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li> </ul>
보복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Retali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랜서가 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청구할 경우, 고용주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프리랜서를 위협하거나 처벌하거나, 블랙리스트로 구분하거나, 권리 청구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임</li> <li>또한, 장래에 업무 배당에서 제외시킨다거나 근로자에게 부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불법임</li> </ul>
고발 (Complai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랜서는 OLPS에 고발장을 접수<sup>17)</sup>할 수 있으며 OLPS는 20일 이내에 고발장을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함.</li> <li>OLPS는 필요할 경우 변호사 섭외와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li> </ul>

자료: 뉴욕시 홈페이지<sup>18)</sup>

14) “Sales representative” means a person or entity who solicits orders in New York state and is not covered by subdivision six of section one hundred ninety and paragraph (c) of subdivision one of section one hundred ninety-one of this article because he or she is an independent contractor, but does not include one who places orders for his own account for resale.  
<https://codes.findlaw.com/ny/labor-law/lab-sect-191-a.html>

15) 원문은 다음과 같음 (§ 20-935 Application; waiver; effect on other laws.)

d. No provision of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as providing a determination about the legal classification of any individual as an employee or independent contractor.

- 프리랜서는 분쟁 발생 시 [그림 2-1]과 같은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뉴욕시는 소송에 필요한 안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음
- 전문 안내상담사(Navigator)를 두어 소송의 접수부터 이후 법률소송에 필요한 내용까지 전담으로 상담을 진행해 주고 있음

**Navigation Program Guide**

- 안내상담사(Navigator) 배정
  - 프리랜서들의 법률적 문제를 돕기 위해 훈련된 직원으로 법조인은 아님
  - 프리랜서(민원인)가 법률 소송에 필요한 법원 시스템을 안내하고, 소송서류 작성방법과 필요시에 적절한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제공
  - 프리랜서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업무 분류, 고용 유형 구분 가이드 제공
  - 이민자 등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프리랜서에게 해석이나 번역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
-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 재판(민사소송) 및 재판 외 방법에 대한 설명
  - 재판 외 방법으로 부정당 고용주를 OLPS에 고발\*, 프리랜서가 고용주와의 협상에 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각각의 절차의 장단점을 적시하여 프리랜서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고 있음

※ OLPS에 고발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절약, 고용주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 프리랜서의 증명책임의 부담 완화, 고용주에 대한 교육 실시로 동일 사건 반복 방지 등이 있음

출처: Navigation Program Guide for Freelance Workers, NYC Consumer Affairs (p7)

- 조례에 따르면 고발 된 문제들의 건수, 금액별 위반 사항, 미응답 회신 통계, 설문지 회수와 사안 결과의 요약, 법 적용 대상 프리랜서에 대한 의견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16) 표준계약서 참조,

<https://www1.nyc.gov/assets/dca/downloads/pdf/workers/Model-Contract-Freelance.pdf>

17) 고발장(Complaint) 서식,

<https://www1.nyc.gov/assets/dca/downloads/pdf/workers/Complaint-Form-for-Freelance-Workers.pdf>

18) <https://www1.nyc.gov/site/dca/workers/workersrights/freelancer-workers.page>



□ 제기된 고발 내용은 대부분 대금 지급 관련 문제들임

- 접수된 고발(264건)의 98%는 임금 지연, 과소 지급, 미지급 관련 내용이며 8%는 계약서 작성 거부, 7%는 보복 관련<sup>22)</sup>

- 접수된 고발건의 대부분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음

- \* 민원의 21%는 안내프로그램 상담사(navigator)를 통해 처리, 77%는 고용자에게 통지한 후에 처리, 2%는 민사 소송 신청( filed a suited in civil court)후 지불 됨
- \* 5건의 소송 사례에서 3건은 첫 번째 법정 출두 전에 처리, 2건은 프리랜서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난 상태로 대금 지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 고소장을 접수받은 고용자의 41.8%(90건)는 회신했으나 과반수 넘는 고용자는 58.2%(120건)는 회신하지 않았음

□ 고발은 다양한 산업 종사자로부터 제기됐으며 그중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72%로 압도적 비중 차지하고 컴퓨터 관련 기술자는 4% 수준

- \* (고발인의 직업) 사진사(11%), 영화 비디오 편집자(9%), 기자(8%)의 비중이 높음 실제 뉴욕시 프리랜서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 05%, 0.3% 수준, 그 외 오디오·비디오 기술자(7%), 프로듀서 감독 (7%), 카메라 오퍼레이터 (5%), 미용 아티스트 5%, 컴퓨터 관련 기술자 4% (IT 스페셜리스트나 프로그래머)

- 뉴욕시의 평균적인 프리랜서에 비해 고발인들은 젊고, 영어를 구사하며, 고학력, 고소득 계층이 많았음

- 고발인의 46%가 18-29세\*로 86%가 학사학위 이상, 중위소득 47,500 달러 이상으로, 97%가 영어를 기본 언어로 구사

- \* 18-29세는 뉴욕시 프리랜서 인구 통계에서는 9%정도 비율 차지, 뉴욕시민 중위소득 3만달러, 영어를 기본 언어로 구사하는 비율은 50%

□ 해당 조례에 따른 고발인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높으나 뉴욕시의 전체적인 프리랜서들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저조한 편\*

- 고발인들은 안내상담사(navigator)의 신속한 응답, 법에 대한 깊은 이해,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과 관심 정도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시

- \* OLPS에 접수된 질의 299건은 15만명의 뉴욕시 프리랜서 기준 0.2%

22) 고용주 고발시 복수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으며 통계합산이 100%를 넘을 수 있음

### 3. 서울시 프리랜서 보호 법안

#### 3.1. 배경

□ 서울시는 프리랜서들의 대한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시 거주 프리랜서들의 실태 조사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18.4)

\* 서울시(2017년기준) 인구 974만명, 서울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526만명, 서울시 임금근로자 410만명(정규 271만명 비정규 139만명), 서울시 프리랜서 7만명 추산<sup>23)</sup>

<표 2-2>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주요 설문 항목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8년 2월 ~ 4월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만 20세 ~ 55세 남녀 총 1,000명												
조사방법	리서치업체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및 그룹별 심층 면접 조사 * 수행기관 : 마크로 엠브레인(주)												
조사항목	<table border="1"> <tr> <td>기본 정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 연령, 프리랜서 경력, 결혼 여부, 자녀 여부,</li> <li>학력, 주거 형태, 가구 보유 형태, 월 평균 가구 소득</li> </ul> </td> </tr> <tr> <td>근로 실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랜서 선택 동기</li> <li>일감·수입 경로, 정기적·지속적 일감 여부</li> <li>한달 및 하루 평균 업무 시간, 휴게 시간</li> <li>지정된 근무 장소 여부, 체감 업무 강도</li> </ul> </td> </tr> <tr> <td>불공정 계약</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서 작성 여부, 불공정 계약 여부, 일방적 계약 해지 여부</li> </ul> </td> </tr> <tr> <td>수입 및 보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평균 수입, 보수(단가) 책정 기준, 보수 지급 시기</li> <li>보수 지연 지급 및 체불 발생 여부</li> </ul> </td> </tr> <tr> <td>생활, 건강, 및 복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가입 여부</li> <li>실업 급여 수혜 경험 여부, 업무상 질병 경험 여부</li> </ul> </td> </tr> <tr> <td>정책 수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법률, 세무 상담 및 피해 구제</li> <li>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지원</li> <li>프리랜서 적정 보수 가이드라인 도입</li> <li>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li> <li>프리랜서 대상 각종 물적 지원 (공간, 바우처 등)</li> <li>금융 지원 (신용대출, 신용회복 등)</li> <li>사실상 노동자 성격의 프리랜서의 직접 고용 및 근로기준법 적용</li> <li>안정적 일감 유지를 위한 매칭 시스템 마련 및 지원</li> </ul> </td> </tr> </table>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 연령, 프리랜서 경력, 결혼 여부, 자녀 여부,</li> <li>학력, 주거 형태, 가구 보유 형태, 월 평균 가구 소득</li> </ul>	근로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랜서 선택 동기</li> <li>일감·수입 경로, 정기적·지속적 일감 여부</li> <li>한달 및 하루 평균 업무 시간, 휴게 시간</li> <li>지정된 근무 장소 여부, 체감 업무 강도</li> </ul>	불공정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서 작성 여부, 불공정 계약 여부, 일방적 계약 해지 여부</li> </ul>	수입 및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평균 수입, 보수(단가) 책정 기준, 보수 지급 시기</li> <li>보수 지연 지급 및 체불 발생 여부</li> </ul>	생활, 건강,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가입 여부</li> <li>실업 급여 수혜 경험 여부, 업무상 질병 경험 여부</li> </ul>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법률, 세무 상담 및 피해 구제</li> <li>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지원</li> <li>프리랜서 적정 보수 가이드라인 도입</li> <li>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li> <li>프리랜서 대상 각종 물적 지원 (공간, 바우처 등)</li> <li>금융 지원 (신용대출, 신용회복 등)</li> <li>사실상 노동자 성격의 프리랜서의 직접 고용 및 근로기준법 적용</li> <li>안정적 일감 유지를 위한 매칭 시스템 마련 및 지원</li> </ul>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 연령, 프리랜서 경력, 결혼 여부, 자녀 여부,</li> <li>학력, 주거 형태, 가구 보유 형태, 월 평균 가구 소득</li> </ul>											
	근로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랜서 선택 동기</li> <li>일감·수입 경로, 정기적·지속적 일감 여부</li> <li>한달 및 하루 평균 업무 시간, 휴게 시간</li> <li>지정된 근무 장소 여부, 체감 업무 강도</li> </ul>											
	불공정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서 작성 여부, 불공정 계약 여부, 일방적 계약 해지 여부</li> </ul>											
	수입 및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평균 수입, 보수(단가) 책정 기준, 보수 지급 시기</li> <li>보수 지연 지급 및 체불 발생 여부</li> </ul>											
	생활, 건강,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가입 여부</li> <li>실업 급여 수혜 경험 여부, 업무상 질병 경험 여부</li> </ul>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법률, 세무 상담 및 피해 구제</li> <li>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지원</li> <li>프리랜서 적정 보수 가이드라인 도입</li> <li>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li> <li>프리랜서 대상 각종 물적 지원 (공간, 바우처 등)</li> <li>금융 지원 (신용대출, 신용회복 등)</li> <li>사실상 노동자 성격의 프리랜서의 직접 고용 및 근로기준법 적용</li> <li>안정적 일감 유지를 위한 매칭 시스템 마련 및 지원</li> </ul>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랜서 진입 경로 및 장단점, 업무 강도</li> <li>불공정 계약 경험 및 피해 사례, 수입 및 보수에 대한 만족도</li> <li>각종 차별 및 인권 침해 경험, 사회 안전망 및 권익 개선 필요성</li> </ul>												

23)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프리랜서 약 42만명, 서울시는 약 7만명 추산됨 (참고, 국민일보(2018. 4. 14), 프리랜서 월 평균 수입 153만원 최저임금 미달)

- 조사 결과 적은 일감과 낮은 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임금 체불 외에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거래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여성 67.4%, 남성 32.4%, 연령별로 보면 20대 41.1%, 30대 27.4%, 40대 22.2%, 50대 9.3%, 경력 6개월 미만 24.9%, 2년 미만 36.0%, 5년 미만 17.9%, 5년 이상 21.2%
- (응답자 종사 산업) 교육 서비스업 24.1%, 도소매업 11.8%,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10.6%, 숙박 음식점 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 7.0% 순

<표 3-1>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요약

조사 항목	조사 문항	조사 결과	비고
근로 환경 관련	일 시작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 등 개인사정 (22.3%)</li> <li>• 일정한 직장에 없애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21.3%)</li> </ul>	적극적 요인과 소극적 요인이 혼재
	일감 입수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취업사이트, 인터넷카페 (39.7%)</li> <li>• 친구, 선후배 (38.0%)</li> </ul>	일감 수주에 인맥이 중요한 작용
	정기적 지속적 일감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 지속적 일감 없음 (54.6%)</li> </ul>	경력과 정기적 지속적 일감 비중은 비례관계
	평균 업무 및 휴게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달 평균 업무 일 (17.5일)</li> <li>• 하루 평균 업무 시간 (6시간 55분)</li> <li>• 하루 평균 휴게 시간 (1시간 30분)</li> </ul>	-
	지정된 근무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해져 있지 않음 (17.6%)</li> </ul>	경력이 길수록 독립된 장소 근무 경향
	체감 업무 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힘들 또는 매우 힘들 (21.6%)</li> </ul>	낮은 단가 및 과도한 책임전가가 주요인
불공정 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작성 (44.2%)</li> </ul>	작성해도 상당수가 교부 받지 못했음
	불공정한 계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와 무관한 지시 및 간섭 (27.8%)</li> </ul>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방적 계약 해지 경험 있음 (60.9%)</li> </ul>	어쩔 수 없이 참는 경우가 대부분
수입 및 보수 관련	월 평균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평균 152.9만원</li> </ul>	'18년도 최저임금 이하
	보수 지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의 관행 (24.4%)</li> </ul>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체불 경험 있음 (23.9%)</li> </ul>	어쩔 수 없이 참는 경우가 대부분

출처: 서울시 공정경제과

-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프리랜서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18. 10).
  -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서울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 지침 마련 그리고 불공정거래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조례에서는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 으로 정의
    - 구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에 소재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대상

<표 3-2> 서울시 프리랜서 조례안 제정 추진 경과

시기	추진경과
2018. 4. 12	서울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 8. 16	서윤기(관악)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99호)
2018. 9. 7	제28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sup>24)</sup>
2018. 9. 14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 (가결)
2018. 10. 4	조례 공포 및 시행

출처: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2019. 9. 18)<sup>25)</sup>

### 3.2. 내용

- 현행법에서 정의 규정이 없는 프리랜서에 대해 서울시 조례에서 최초로 정의하였고, 적용대상을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 내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프리랜서로 명확히 함

24) 조례(안) 제9조(공정거래지침) 제3항에 공정거래 지침 준수 요청을 따르지 않는 민간기업, 기관, 협회와의 용역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 가결

25)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 국내 법 체계 하에서는 법(노동관계법)과 서울시 조례가 충돌할 경우 노동관계법에 따라 프리랜서의 법적지위를 판단 함
  -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서울시 소재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
- 서울시 조례는 프리랜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와 활동을 명시하고 있음<sup>26)</sup>
- 서울시는 프리랜서의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프리랜서 노동환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기본계획(제6조)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sup>27)</sup>, 교육홍보, 법제도 개선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
  -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 및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등을 위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근거 규정을 담고 있음<sup>28)</sup>.
    - 공정거래지원센터(제10조)는 법률·세무·노무 상담 및 대응,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단체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담당
  - 뉴욕시 조례와는 다르게 해당 조례를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고발 절차와 행정적 제재 수단이 없어 프리랜서 보호에 한계가 있음
    - \* 뉴욕시 프리랜서 보호조례는 § 20-931(고발 절차와 국장의 관할권), § 20-934(반복적, 관행적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 등으로 프리랜서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 함

26)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2018. 10.4)

27) 2019~2023년 5년간 약 140억원의 비용 예상 (비용추계서 참고)

28)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6158024>

<표 3-3> 서울시 프리랜서 조례 내용

항목	내용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li> </ul>
제3조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대상</li> </ul>
제4조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 노력</li> <li>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 노력</li> <li>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 및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li> </ul>
제5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li> </ul>
제6조 기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li> </ul>
제7조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li> <li>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li> </ul>
제8조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한 경우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li> <li>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li> </ul>
제9조 공정거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li> </ul>
제10조 공정거래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랜서의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li> </ul>
제11조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li> </ul>
제12조 기관·단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li> </ul>
제13조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li> </ul>

## 4. 정책 시사점

### □ 플랫폼 경제 시대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호 장치 마련에 의의

○ 플랫폼 경제시대에 점차 규모가 늘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법상 법적 지위가 모호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프리랜서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를 시작한데 의의가 있음

-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의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서 생길 수 있는 정책적 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

\* 뉴욕시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행정적 서비스(고발장접수, 고용자 행정조치, 소송안내 등)제공으로 프리랜서의 소송 부담 경감

-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여전히 각각의 소송에서 노동관계법이 적용\*<sup>29)</sup>되나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조례에 근거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 노동자가 산업 재해 등으로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뉴욕시 조례와 서울시 조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일반 노동관계법에 따른 판단 필요

○ 두 조례 모두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업무 수행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을 목표로 함

### □ 프리랜서의 정의 규정 제정으로 보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

○ 뉴욕시는 프리랜서를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독립계약자\*로 규정한 반면, 서울시는 조직에 속하지 않는 자유계약자(개인)로 지칭하는 차이를 보임

- 뉴욕시는 일부 전문직은 프리랜서에서 제외하였으며 특정 직업 종사자를 프리랜서에서 제외해야 할지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짐

\* 뉴욕시 노동법 제191-a에 정의된 영업사원, 법무종사자, 면허 보유 전문 의료인은 프리랜서에서 제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프리랜서에서 제외해야 할 직업군에 대해 5년마다 시의회에 제출해야 할 운영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29) 뉴욕시 § 20-935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성문법(주법, 연방법)이나 관습법에 반할 수 없음을 명시

- 프리랜서가 체결하는 계약의 종류는 뉴욕시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정된 반면, 서울시는 용역 계약 외의 것\*도 포함할 수 있도록 자유계약으로 지칭

\* 용역계약 외에는 근로계약, 위임계약 등이 있음

- 보호대상이 되는 프리랜서 대상은 거주 지역이나 용역발주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뉴욕시 조례는 뉴욕시 거주자로 한정되나,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거주자 외에도 서울에 사업장을 가진 공공·민간 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프리랜서<sup>30)</sup>에게 적용 되므로 적용대상에 차이가 있음

#### □ 프리랜서의 공정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운영

- 뉴욕시는 노동정책기준국(OLPS)을 통해 프리랜서 권익보호 활동을 진행중이며 서울시는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해 프리랜서의 권리 및 권익 보호를 지원할 예정
  - 특히, 현재 실행중인 뉴욕시의 소송안내프로그램은 별도의 훈련된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 기한 내 처리결과를 알려 줌으로써 고발인의 만족도가 높음
  - 또한, 자체 법률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소송 전 분쟁해결을 위한 투명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안내서비스(Court Navigation Program)를 통해 민원인의 소송 준비와 변호사와의 연결을 지원
- 뉴욕시 노동정책기준국의 역할은 대부분은 분쟁(계약, 대금 지불)에 관련된 업무가 차지하고 있으며 프리랜서의 업무 여건 개선, 공정 거래 문화 조성, 복지 지원 제도 개선 등에 부가적 지원 사업은 미약

#### □ 사업 추진 현황의 주기적 점검 및 데이터 공개

- 뉴욕시와 서울시 모두 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뉴욕시는 법 시행 1년 또는 5년마다 추진 현황 자료를 온라인으로

30) 프리랜서의 거주지에 상관없음

공개<sup>31)</sup>하며 서울시는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반영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뉴욕시의 신속한 정보 수집 방식과 온라인 공개<sup>32)</sup>는 아직 전담조직 운영을 하지 않은 서울시나 지자체에 참조가 될 수 있음
  - 뉴욕시는 분쟁 처리 후 6개월 이내에 민원인에게 사후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처리 결과를 통계화 및 보고서로 작성해 웹사이트에 게재
    - \* 세부적으로 \$500 단위별 고발 건수, 분쟁 유형, 체불 금액, 응답 및 미응답 건수, 설문지 회수 비율, 처리 결과, 진행 상태 등 통계 정보 구축<sup>33)</sup>
- 뉴욕시는 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 정보 수집이 중심이며 서울시는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제8조)에 반영
  - 비용이 수반되는 상세 실태 조사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분쟁 관련 통계, 프리랜서의 종사자의 변동 추이는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

#### □ 사후 분쟁 해결 서비스 또는 포괄적 예방 및 보호 사의 정책적 선택

- 뉴욕시는 사후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 행정 서비스에 중점을 둔 반면 서울시는 사전적이며 적극적인 예방 및 보호 정책의 성격을 가짐
  - 뉴욕시는 민원인의 고발장을 시작으로 소송으로 가기 전 고용주와 프리랜서 간의 분쟁 해결에 초점을 둔 행정 서비스 제공에 집중
  - 서울시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별도 지원센터 설치 등 프리랜서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지향
- 프리랜서 스스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노후 소득 및 복지혜택 (연금, 공제회, 건강권 등)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의 모색은 필요
  -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전문 분야별로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들의 연금 소득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31) Freelancer Act 20-936 후속 조치, 자료 수집, 보고 항목 참조

32) 뉴욕시 OLPS 1년 운영 현황 보고서

<https://www1.nyc.gov/assets/dca/downloads/pdf/workers/Demanding-Rights-in-an-On-Demand-Economy.pdf>

33) 뉴욕시 Freelancer Act 20-936c 항에 명시

\* (건설공제회)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 적립 사업 운영, (과학기술인공제회) 기술사에게 공제회 가입 자격을 부여 (예술인복지재단) 문화 예술 종사자들에게 활동증명, 창작금 지원, 표준계약서보급, 시간제 자녀 돌봄 시설, 상담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표 4-1> 뉴욕시와 서울시 프리랜서 보호법 비교

	뉴욕시	서울시	비고
프리랜서 정의(지위)	독립계약자로 고용되거나 유지되는 자연인 또는 1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법인격 여부 또는 상호명 사용 여부를 불문한 조직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무소속의 자유계약자	뉴욕시 노동법 제191-a에 정의된 영업사원, 법무종사자, 면허 보유 전문 의료인은 제외 * 뉴욕시 이민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법 적용
전담 조직	노동정책기준국 (OLPS)	공정거래지원센터(가칭)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을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가능
주요 서비스	고용주와 프리랜서간 분쟁(체불) 처리 및 소송 안내 및 상담 서비스 (Navigation Program)	센터를 통한 부당거래, 임금 체불,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 예방 및 구제 사업 시행	뉴욕시 고발장 접수 후 고용주의 회신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
정보 수집 및 보고	시행 후 1년 또는 매5년 다양한 정보 기록 (금액별, 유형별, 설문회수율, 해결 상황 등)	추진실적의 점검 매5년마다 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	뉴욕시는 특정 직업을 프리랜서 정의 범위에서 제외해야하는 지 여부 고려한 입법 제언

**별첨1: 뉴욕시 프리랜서 보호 조례 (The Freelance Isn't Free Act)**

항목	제목	내용						
§ 20-927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시 OLPS(노동기준국) 국장(이하 국장), 프리랜서, 고용주</li> <li>• “프리랜서”란 보상을 대가로 용역을 고용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격을 갖는 1인 회사의 직원을 의미함 (다만, 영업사원, 변호사, 의료인은 제외)</li> </ul>						
§ 20-928	서면계약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랜서와 고용주는 120일간 800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호 간 서면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음</li> <li>• 계약서에 프리랜서가 수행해야 하는 용역의 내용, 이행에 대한 급부, 급부의 지급 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함</li> </ul>						
§ 20-929	불법지불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자는 프리랜서에게 계약 조건에 정한 시기 이전에 지급해야 함</li> <li>• 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명시 하지 않은 경우 과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함</li> </ul>						
§ 20-930	보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랜서가 해당 장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준비행위를 할 경우 고용자는 이러한 이유로 프리랜서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없음</li> </ul>						
§ 20-931	고발 절차와 국장의 관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법의 위반이 있을 경우 프리랜서는 2년 이내에 국장에게 고발할 수 있음</li> <li>• 고발이 있을 경우 국장은 § 20-932에 따른 안내 프로그램에 따르도록 안내</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관할권</th> <th>절차</th> </tr> </thead> <tbody> <tr> <td>없음</td> <td>노동기준국장은 10일 이내 관할권 없음을 프리랜서와 고용자에게 통지 (* 관할권 없는 경우 1)프리랜서가 민사소송 제기 2)연방법, 주법에 따라 동일내용의 계약위반 고발이 있는 경우)</td> </tr> <tr> <td>있음</td> <td>①노동기준국장은 20일 이내 고발사실을 고용자에게 통지 ②고용자는 20일 이내 이에 대한 응답서와 반대증거 제출 ③노동기준국장은 20일 이내에 고용자의 응답서 등을 프리랜서에게 제공</td> </tr> </tbody> </table>	관할권	절차	없음	노동기준국장은 10일 이내 관할권 없음을 프리랜서와 고용자에게 통지 (* 관할권 없는 경우 1)프리랜서가 민사소송 제기 2)연방법, 주법에 따라 동일내용의 계약위반 고발이 있는 경우)	있음	①노동기준국장은 20일 이내 고발사실을 고용자에게 통지 ②고용자는 20일 이내 이에 대한 응답서와 반대증거 제출 ③노동기준국장은 20일 이내에 고용자의 응답서 등을 프리랜서에게 제공
		관할권	절차					
없음	노동기준국장은 10일 이내 관할권 없음을 프리랜서와 고용자에게 통지 (* 관할권 없는 경우 1)프리랜서가 민사소송 제기 2)연방법, 주법에 따라 동일내용의 계약위반 고발이 있는 경우)							
있음	①노동기준국장은 20일 이내 고발사실을 고용자에게 통지 ②고용자는 20일 이내 이에 대한 응답서와 반대증거 제출 ③노동기준국장은 20일 이내에 고용자의 응답서 등을 프리랜서에게 제공							
<table border="1"> <thead> <tr> <th>관할권</th> <th>절차</th> </tr> </thead> <tbody> <tr> <td>없음</td> <td>노동기준국장은 10일 이내 관할권 없음을 프리랜서와 고용자에게 통지 (* 관할권 없는 경우 1)프리랜서가 민사소송 제기 2)연방법, 주법에 따라 동일내용의 계약위반 고발이 있는 경우)</td> </tr> <tr> <td>있음</td> <td>①노동기준국장은 20일 이내 고발사실을 고용자에게 통지 ②고용자는 20일 이내 이에 대한 응답서와 반대증거 제출 ③노동기준국장은 20일 이내에 고용자의 응답서 등을 프리랜서에게 제공</td> </tr> </tbody> </table>	관할권	절차	없음	노동기준국장은 10일 이내 관할권 없음을 프리랜서와 고용자에게 통지 (* 관할권 없는 경우 1)프리랜서가 민사소송 제기 2)연방법, 주법에 따라 동일내용의 계약위반 고발이 있는 경우)	있음	①노동기준국장은 20일 이내 고발사실을 고용자에게 통지 ②고용자는 20일 이내 이에 대한 응답서와 반대증거 제출 ③노동기준국장은 20일 이내에 고용자의 응답서 등을 프리랜서에게 제공		
관할권	절차							
없음	노동기준국장은 10일 이내 관할권 없음을 프리랜서와 고용자에게 통지 (* 관할권 없는 경우 1)프리랜서가 민사소송 제기 2)연방법, 주법에 따라 동일내용의 계약위반 고발이 있는 경우)							
있음	①노동기준국장은 20일 이내 고발사실을 고용자에게 통지 ②고용자는 20일 이내 이에 대한 응답서와 반대증거 제출 ③노동기준국장은 20일 이내에 고용자의 응답서 등을 프리랜서에게 제공							
§ 20-932	안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장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장은 온·오프라인 안내 프로그램 수립해야 함</li> </ul>						
§ 20-933	민사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장의 위반에 대하여 프리랜서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li> <li>• § 20-928 위반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에, § 20-929 및 § 20-930 위반이 있을 경우에 6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li> <li>•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재판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음</li> </ul>						
§ 20-934	반복적, 관행적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장에 위반사항을 고용자가 반복적, 관행적으로 할 경우 뉴욕시 법률담당관은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개시할 수 있음</li> <li>• 법원은 고용자가 반복적, 관행적으로 해당 장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민사적으로 25,000달러 이내로 민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이는 시의 제정으로 귀속함</li> </ul>						
§ 20-935	적용, 포기, 다른 법률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장과 관련한 프리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공공정책에 반하여 무효임</li> <li>• 해당 장의 내용은 성문법과 관습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보충자료로 사용되며, 이를 대체하거나 효과를 감소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li> <li>• 해당 장을 준수하지 않은 프리랜서와 고용자의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li> <li>• 해당 장은 프리랜서의 법적지위 판단에 대한 해석자료로 활용 할 수 없음</li> </ul>						
§ 20-936	후속 조치, 자료 수집,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기준국장은 프리랜서에게 분쟁의 조정, 화해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설문을 하여야 함</li> <li>• 뉴욕시 국장은 해당 장의 위반을 의심하는 고발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음</li> <li>• 뉴욕시 국장은 고발에 등 해당 장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공시하여야 함</li> </ul>						

**별첨2: 뉴욕시 고발장의 주요 항목 (Complaint Form for Freelancer Workers)**

구분	세부 항목
프리랜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름, 주 사용 언어, 사업체명(선택), 직업</li> <li>•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li> <li>• 종사업종 (아키텍트/설계, 건설, 교육, 식품서비스, 제조산업체, 언론출판, 마케팅, 비영리, 기타 미디어, 소매 패션, 운송, 기타)</li> <li>• 변호사 선임 여부 (선임시, 변호사 성명 및 연락처)</li> </ul>
고용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주 유형 (개인 또는 사업체 또는 기타) 기타: 상세기술</li> <li>• 성명,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li> </ul>
프리랜서와 고용자간 합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시 가업 내용 기술</li> <li>• 계약건의 대략적 가치(금액), 체불 총액,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li> <li>• 고용자와의 합의 일자 (년/월/일)</li> <li>• 합의된 업무 상세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자고 고용자에게 요구했는지 여부</li> <li>•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고용주의 대가지불 통지 방법 (구두, 이메일, 제3자)</li> <li>• 합의된 지불 금액</li> <li>•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의 완료 일자 (년/ 월/ 일)</li> <li>• 합의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날짜 (년 / 월 / 일)</li> </ul>
부가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또는 연방 정부 조직에 고용되어 일을 했는지 여부</li> <li>•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고용되었는지 여부</li> <li>• 고용주의 판매영업을 위해 고용되었는지 여부</li> <li>• 면허를 받은 전문 의료인지 여부</li> <li>• 개인으로 또는 두 명 이상의 그룹의 일원으로 고용되었는지 여부</li> <li>• 법원이나 행정조치 통해 대금을 받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이름과 일자, 상태, 사건 번호(case number) 기재)</li> <li>• 고발과 관련된 사항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 기한을 넘기거나 과업 종료 30이 넘긴 임금 지연 건)</li> <li>✓ (상세 과업을 반영한 서면 계약서 작성 거절)</li> <li>✓ 프리랜서 보호법에 따른 권리 추구 행동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 (미래 일 감 확보 방해 포함)</li> <li>✓ 서면 계약서에 필수 조건(required terms)의 포함 거절</li> <li>✓ 업무개시 후 고용주가 기한 내 지급을 위해 약속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지 요청한 경우</li> <li>✓ 기타 (상세 기술)</li> </ul> </li> <li>• 고용주에 대한 고발(민원)에 대한 상세 기술 (필요시 별도 용지 작성)</li> <li>• 민원과 관련하여 기타 관련 정보 기술</li> <li>※ 기타 고발과 관련한 서류 첨부 가능 (주문용청서, 계약서, 응답, 기타 업무와 지급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li> </ul>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발인(프리랜서) 서명, 날짜</li> <li>※ 미성년(18세미만)일 경우 부호나 보호자 서명, 날짜</li> </ul>

출처: NYC Complaint Form For Freelance Workers (뉴욕시 홈페이지) (2019. 1 현재)

### 별첨3: 뉴욕시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내용

구분	세부 항목
계약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랜서와 고용주 정보</li> <li>- 각각의 이름, 사업체 명, 연락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li> <li>* 연락담당자는 과업 완료와 지불 문제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사람</li> <li>* 고용주는 프리랜서의 요청에 대해 합리적 방법으로 3일내 응대할 것</li> </ul>
과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서비스(업무)의 상세 기술</li> <li>- 어떤 형태의 비용 또는 상환 받을 비용 등을 포함</li> <li>* 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예) 원고 작성, 사진 저작권 매매, 프로그램 개발, 몇 시간 근무 또한 선행 작업이나 수정사항에 대해서 가격에 반영</li> <li>• 지불 금액 또는 요율 (시간당, 담당 부분 당)</li> </ul>
지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 상 총 지불 금액</li> <li>• 지급 방식 : 현금, 수표, 기타</li> <li>• 지급 시기 (*시기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30일안에 지급해야 함)</li> </ul>
선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늦은 지불 : 고용주가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프리랜서는 지연에 대해 총 금액 대비 ___%의 지체금을 부과할 수 있음</li> <li>• 착수금 (retainer): 고용주는 \$___를 프리랜서에게 착수금으로 ___까지 지급하며 지급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음</li> <li>• 분할 지급 : 고용주는 프리랜서에게 정해진 날짜에 맞춰 분할 지급 함 (\$___를 ___까지, \$___를 ___까지, \$___를 ___까지)</li> <li>• 계약 기한, 수정, 종료 : 계약은 사인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 수정, 종료할 수 있음, 종료시 그 시점까지 한 작업에 대해 고용주는 미상환 비용까지 포함해 지불해야 함</li> <li>• 소관 법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뉴욕 주 및 시 법률의 적용을 받음</li> <li>• 책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약에 따른 관습법상의 어느 당사자의 책임은 계약의 가치로 제한 됨</li> <li>- 고용 당사자는 프리랜서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 상해 또는 건강 상태 또는 프리랜서 노동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살핌이나 휴식의 필요성으로 인해 마감일에 따라 일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음</li> <li>- 작업을 완료 할 수 있는 기회가 특정 시간이나 장소로 제한되는 경우 고용 당사자의 손해는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원천 징수 근로자의 원천 징수로 제한 됨</li> </ul> </li> <li>• 소유권 : <input type="checkbox"/>소유권 <input type="checkbox"/>저작권 <input type="checkbox"/>라이선스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랜서 근로자는 최종 지불에 맞춰 소유권을 고용주에게 이전함</li> <li>- 만약 프리랜서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최종 산출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승인을 얻어야 함 (최종 산출물 활용 목적 상세 기술)</li> <li>- 프리랜서의 부적절한 사용 시 고용주는 프리랜서에게 법원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사용 금액의 ___%를 벌칙으로 부과할 수 있음</li> </ul> </li> <li>• 기밀 유지 : 기밀 사항을 유지, 기밀 정보의 사용 제한</li> <li>• 일반 : 첨부 파일을 포함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당사자의 실행은 제한됨</li> </ul>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랜서 서명 및 날짜, 고용주 서명 및 날짜</li> </ul>

출처: <https://www1.nyc.gov/assets/dca/downloads/pdf/workers/Model-Contract-Freelance.pdf>

## [참고문헌]

- [1] 국민일보, 프리랜서 월 평균수입 153만원 최저임금 미달, 2018. 4. 12
- [2] 관계부처 합동, 공유경제활성화전략, 2019. 1.9
- [3] 관계부처 합동, Innovative Platform,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2018. 8
- [4] 뉴스위크한국판, 프리랜서 경제의 부상, 2017. 9. 25,
- [5] 박은정,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과 오분류의 문제, 노동리뷰 2018년 7월호, 2018. 7. 10.
- [6] 이승렬 외,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한국노동연구원, 2013. 12
- [7] 서울경제, 공유경제 어디까지 와 있나, 2016. 8. 17
- [8]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조례공포안의 정리, 2019 9. 18
- [9] Online Labour Index, <https://ilabour.oii.ox.ac.uk/online-labour-index/> (2019. 1. 29 방문)
- [10] Scott M. Stringer, Our Immigrant Population Helps Power NYC Economy, 2017. 1.
- [11] Thomas P. Dinapoli & Kenneth B. Bleiwas, 뉴욕시 경제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역할, 2013. 11.
- [12] Independent Drivers Guild, NYC Sets Nation's First Minimum Wage for App-based Drivers, 2018. 12. 4.
- [13] Freelancers Union, The Costs of Nonpayment, 2015
- [14] NYC Consumer Affairs, Navigation Program Guide for Freelance Workers
- [15] NYC Consumer Affairs, Demanding Rights in an On-demand Economy: Key Findings from Year One of NYC's Freelance isn't Free Act, 2018. 5
- [16]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latform\\_economy](https://en.wikipedia.org/wiki/Platform_economy), 2019. 1. 29 방문

## 주 의

1.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의해 작성된 [SPRI 보고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